

민사상 괴롭힘 금지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특정 행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말합니다.

본 명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명령 요청자와의 접촉 금지
 - 명령 요청자 및 해당자의 자택 및 직장에 대한 접근 금지
 - 명령이 발효되는 한 총기, 총기 부품, 탄약 또는 방탄복 소지 금지 명령. 여기에는 총기 리시버 및 프레임, 리시버 또는 프레임으로 사용되거나 쉽게 변환될 수 있는 물품이 포함됩니다(형법 16531장 참조).
- 귀하가 소지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lfhelp.courts.ca.gov/restraining-orders/prohibited-items 를 참조하십시오.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은 누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거나 처해있어 안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 괴롭힘
- 성폭행을 포함하는 폭행 또는
- 폭력 위협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달된 서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법원 심리 통지서에 법원 출석일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 때까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도 심리 때까지 계속해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 요청자가 요청하는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리 날짜 전에 [CH-120](#) 양식(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답변서)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MC-025](#)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법률 출판사나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courts.ca.gov/rules-forms/find-your-court-forms)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의 답변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까?
예. 본인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개인을 통해 명령 요청자(또는 요청자의 변호인)에게 작성한 CH-120 양식 사본을 우편으로 송달하십시오. (이를 '우편 송달'이라고 합니다.)

우편으로 본 양식을 송달하는 자는 [CH-250](#) 양식(답변 우편 송달 증명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자는 해당 양식 원본에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을 마친 양식은 법원에 제출하거나 심리에 지참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까?

예. CH-109 양식(법원 심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법원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사는 귀하의 의견 청취 없이 귀하에게 불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 지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심리 전에 법원에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명령은 심리일까지 지속됩니다. 그 시점에서 법원은 명령의 지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를 통해 내리는 명령은 최대 5년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항상 좋은 생각이나 필수 사항은 아니며 귀하에게는 법원이 지명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 서기에게 귀하의 카운티에 있는 무료 및 저렴한 법률 서비스 및 자조 센터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법원 심리에서 명령 요청자를 만나게 됩니까?

예. 명령 요청자가 심리에 출석할 것으로 가정하십시오. 판사나 요청자 변호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요청자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

법원 심리에 증인 동반이 가능합니까?

예. 심리에 증인을 대동하거나 해당 사례에 도움이 되는 서류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증인이 목격하거나 들은 부분에 대한 서면 진술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에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MC-030](#)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INT-300](#)(통역사 요청서(민사)) 양식을 사용하거나 지역 법원 양식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통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lfhelp.courts.ca.gov/request-interpretor](#) 를 참조하십시오.

절차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elfhelp.courts.ca.gov/CH-restraining-order](#)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지역 정보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총기(총), 총기 부품, 화약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명령 이행 기간에는 총기(권총), 총기 부품, 탄약 또는 방탄복을 보유,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총기(권총), 총기 부품, 탄약이 있는 경우, 허가된 총기상에게 판매하거나, 보관하도록 맡기거나,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총기 또는 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사가 귀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업무상 총기 또는 화약을 소지할 수 있는 허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허가 권한을 부여받기 전 귀하는 판사에게 (1) 업무상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해야 하고, (2) 고용주가 귀하를 총기 또는 탄약 소지가 불필요한 업무로 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 입증해야 하는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respond-to-CH-restraining-order/obey-firearms-orders](#) 또는 민사소송법 제527.9(f)항을 참조하십시오.

본인이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무, 생계, 안전상 방탄복을 소지 및 착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방탄복을 소지 및 착용해야 하는 카운티의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에게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60(c)항 참조).

보호 대상자와 합의하여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판사만이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취소하려면 귀하 또는 보호 대상자가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가 있거나 법원에 있는 동안 편의가 필요한 경우, [MC-410](#)(장애 편의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하십시오.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C-410-INFO](#)(법원에 장애 편의를 요청하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